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목 차

Contents

I. 제도 개요	1
1. 도입취지 / 1	
2. 개요 / 1	
II. 주요내용	2
1. 손금의 정의 / 2	
2. 적용 대상자 / 3	
3. 업무용승용차 범위 / 3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6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6	
6.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7	
7.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 7	
8.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7	
9.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8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 9	
11.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 10	
12. 소득처분 / 10	
13.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11	
14.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11	
15. 적용시기 / 11	
III. 세무조정 사례	17
IV.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23
V.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방법 및 서식	29
V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38
VII. 주요 예규 및 판례	47
VIII. 연도별 개정사항	58
IX. 주요 사적사용 추정사례	70
X. 관련법령	71

I. 제도 개요

1. 도입취지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법법§27의2, 소법§33의2)
 - 제도 도입 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명확한 과세기준을 정립

2. 개요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 ③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

사적사용	사적·업무 혼용	업무전용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 ¹⁾	전액 비용 인정 ²⁾

1)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전용보험 + 연간 한도(8백만원)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공제 시기를 이월



Ⅱ. 주요내용

1. 손금(필요경비)의 정의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함)의 금액으로 함(법법§19①)
-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법법§19②)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 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소법§27①)

2. 적용 대상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확대 적용(소득세법 부칙§1·3, 법률 제13558호)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소령§208⑤)

구분	업 종	기준금액 (‘19년 귀속)
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호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전문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3. 업무용승용차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 다음의 차량은 제외(법법§27의2, 소법§33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 자동차('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飲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 4.~6.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20. 생략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과세물품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정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4, 대통령령 제26981호)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 개인사업자는 '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다음과 같이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적용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¹⁾, 전문직 업종²⁾ 사업자
 - 1)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i) 농업, 도·소매업 : 15억원, ii) 제조업, 음식·숙박업 : 7.5억원, iii) 서비스업, 임대업 : 5억원 등(소령§133)
 -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6.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국세청고시 제2019-16호(법인사업자) 및 제2019-17호(개인사업자)에 따라 작성

7.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8.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3,000만원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50%(1,500만원 / 3,000만원)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함(법령§42②)
- 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 ③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9.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임의상각 및 결산조정)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필요경비)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특별히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강제상각 등)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결산시 장부에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때에도 그 부족액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상각범위액) 기업이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라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 계산요소가 되는 취득가액·내용연수·잔존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또한, 각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로 세법에 규정된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한도로 함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제도 시행 전 · 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비교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	5년
상각방식	임의상각	강제상각
손금산입 한도	상각범위액	800만원(400만원)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인

11.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12. 소득처분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유보 처분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106①(3)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106①(3)다)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13.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

14.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15. 적용시기

-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확대 적용(소득세법 부칙§1·3, 법률 제13558호)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 ('16.1월~3월) '16.4월부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다만,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 계산가능

참고 1 차종별 업무용 승용자동차 규정 적용 여부(예시)

회사별	명 칭	차종 (용도)	정 원 (승차인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부	비 고
현 대 자동차 (주)	뉴클릭, 엑센트	승용	5	○	
	i30, i30cw	승용	5	○	
	아반떼	승용	5	○	
	제네시스쿠페	승용	4	○	
	NF쏘나타, YF쏘나타	승용	5	○	
	그랜저, 제네시스	승용	5	○	
	에쿠스	승용	4,5	○	
	투싼ix, 베뉴	승용	5	○	
	싼타페, 베라크루즈	승용	7	○	
	테라칸	승용	7	○	
	팔리세이드	승용	8	○	
	그랜드 스타렉스(왜건)	승합	9,11	×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	3,5	×	
	e마이티, 트라고, 포터 II	화물	2~7	×	
기 아 자동차 (주)	모닝	승용	5	×	경형
	프라이드	승용	5	○	
	포르테, 포르테쿵	승용	5	○	
	로체	승용	5	○	
	스팅어	승용	5	○	
	셀토스	승용	5	○	
	K3, K5, K7, K9	승용	5	○	
	오피러스, 쏘울	승용	5	○	
	스포티지, 쏘렌토	승용	5	○	
	모하비, 카렌스	승용	7	○	
	카니발	승용	7	○	
	카니발	승합	9,11	×	
	봉고트럭	화물	3,6	×	
	그랜버드	승합	28~45	×	



회사별	명 칭	차종 (용도)	정 원 (승차인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부	비 고
한국지엠(주)	알페온	승용	5	○	경형 경형 경형
	토스카	승용	5	○	
	원스툼	승용	5~7	○	
	젠트라X	승용	5	○	
	라세티프리미어	승용	5	○	
	말리부	승용	5	○	
	이쿼녹스	승용	5	○	
	다마스	승합	5~7	×	
	라보	화물	2	×	
	마티즈크리에이트브	승용	5	×	
쌍 용 자동차 (주)	티볼리	승용	5	○	
	렉스턴	승용	5,7	○	
	카이런	승용	5,7	○	
	엑티언	승용	5	○	
	엑티언스포츠	화물	5	×	
	로디우스	승합	11	×	
	체어맨	승용	5	○	
르노삼성 자동차 (주)	SM 3	승용	5	○	
	SM 5	승용	5	○	
	SM 6	승용	5	○	
	SM 7	승용	5	○	
	QM 5	승용	5	○	
	QM 6	승용	5	○	

※ 밴차량(차종 : 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과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참고 2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간 비교

구분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
관할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성격	금융	금융적 성격	임대차적 성격	임대차
자동차의 용도분류	자가용			사업용
과세분류 (차량용도)	국 세 : 비사업용 지방세 : 비영업용			국세 : 사업용 지방세 : 영업용
등록명의	이용자	리스회사 또는 이용자		렌탈회사
본래목적	기업(혹은 개인)의 설비 조달			개인(혹은 기업)의 일시적 사용
기간	제약 없음	내용연수의 20%(1년) 이상		차령(5년) 내용연수 이내에서 제약없음
대상물건	이용자가 선택하는 모든 동산 (자동차 등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물건)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유지·보수	이용자가 부담			렌탈회사가 부담
번호판	기호(비사업용) : “허”, “하”, “호” 외 가능			기호(사업용) : “허”, “하”, “호”만 가능
영업장	제약 없음	제약 없음 (단기리스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차고지 불필요)		일정규모 차고지 유지 필요
보험료	자가용 요율 적용 개별 할인·할증			영업용 요율 적용 단체 할인·할증



참고 3 리스, 렌탈 세제 비교

구분			리스차	렌터카	관련법규
구입	국세	개별 소비세	물품가격 x 5%	면세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5%)	• 개별소비세법§12(3) • 개별소비세법§18①(3)라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면세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개별소비세 x 30% 추징)	• 교육세법§5
		부가세	면세 (유지관리조건부리스 : 리스로 x 10%)	과세 : 렌탈료 x 10%	• 부가가치세법§26①(11) • 시행령§40①(9) • 부가가치세법§13, §30
보유	지방세	취득세	판매가 x 7% (경차의 경우 4%)	판매가 x 4%	• 지방세법§12①(2)가 • 지방세법§12①(2)다의2
		자동차세	• 1600cc이하 : cc당80~140원 • 1600cc초과 : cc당 200원	• 2500cc 이하 : cc당18~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지방세법§127①(1)
		지방 교육세	자동차세 x 30%	면세	• 지방세법§150(7) • 지방세법§151①(7)

III. 세무조정 사례

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text{원} \div 5\text{년} = 8,000,000\text{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text{원} + 2,000,000\text{원} + 500,000\text{원} + 8,000,000\text{원} = 11,000,000\text{원}$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B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40,000,000\text{원}$

-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세무조정 계산사례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40,000,000\text{원}$
- 업무사용비율 : 25%*
 - * $15,000,000\text{원} / \text{총비용 } 60,000,000\text{원}(40,000,000\text{원} + 20,000,000\text{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4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text{총 비용}(60,000,000\text{원}) - [\text{총 비용}(60,000,000\text{원}) \times \text{업무사용비율}(25\%)]$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 $[\text{감가상각비}(40,000,000\text{원}) \times \text{업무사용비율}(25\%)] - 800\text{만원}$

3.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20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40,000,000\text{원}$

○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세무조정 계산사례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40,000,000\text{원}$
- 업무사용비율 : 70%(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18,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총 비용(60,000,000원) - [총 비용(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7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 [감가상각비(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70%)] - 800만원

□ C법인은 '21.1.10.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5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내역

구 분	차 변	대 변
회계상 분개	현금 50,000,000원 처분손실 150,000,000원	차량운반구 200,000,000원
세무상 분개	현금 50,000,000원 감가누계액 20,000,000원 처분손실 130,000,000원	차량운반구 200,000,000원
세무조정	처분손실 과대계상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손실 한도초과분 122,000,000*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130,000,000\text{원} - 8,000,000\text{만원} = 122,000,000\text{원}$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	



4.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세무조정 내역 비교

- 사례 B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000,000원 포함) 중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상각비 2,000,000원 이월공제)받고 45,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 사례 C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000,000원 포함) 중 업무사용비율 70%인 42,000,000원 (상각비 20,000,000원 이월공제) 손금 인정받고 사적사용분 18,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내역 비교

(단위: 원)

구 분	회 사 계상액 (B, C법인)	차량기록부 미작성(B법인)		차량기록부* 작성(C법인)		비 고
		손금인정액	세무조정	손금인정액	세무조정	
차 량 유지비	20,000,000	5,000,000	15,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14,000,000	6,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사적사용 세무조정
감 가 상각비	0	8,000,000	40,000,000 손금산입 (유보)	8,000,000	40,000,000 손금산입 (유보)	미상각 세무조정
			30,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12,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사적사용 세무조정
			2,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20,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한 도 초과계산
계		13,000,000		22,000,000		

* 업무사용비율 : B법인 25%, C법인 70%

5. 연도 중 차량 취득,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D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7.1.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20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times (6\text{월}/12\text{월}) = 20,000,000\text{원}$

○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세무조정 계산사례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2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times (6\text{월}/12\text{월}) = 20,000,000\text{원}$

- 업무사용비율 : 70%(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40,000,000원) - [총 비용(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7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2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70%)] - [800만원 × (6월/12월)]



6.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E법인(부동산임대업*, 12월말 법인)이 '20.1.1. 3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 사업연도 차량 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법령§42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 $3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60,000,000\text{원}$

○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세무조정 계산사례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6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 $3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60,000,000\text{원}$
- 업무사용비율 : 6.25%*
 - * $5,000,000\text{원} / \text{총비용 } 80,000,000\text{원}(60,000,000\text{원} + 20,000,000\text{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7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text{총 비용}(80,000,000\text{원}) - [\text{총 비용}(80,000,000\text{원}) \times \text{업무사용비율}(6.25\%)]$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 * $[\text{감가상각비}(60,000,000\text{원}) \times \text{업무사용비율}(6.25\%)] - 400\text{만원} = \Delta 250,000\text{원}$

Ⅳ.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3. 2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법 인 명
~	사업등록번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1. 업무사용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① 차량 번호	② 차종	③ 임차 여부	④ 보험 가입 여부	⑤ 총주행 거리 (km)	⑥ 업무용 사용거리 (km)	⑦ 임 무 사용비용 ((⑥)/⑤)	⑧ 취득가액 (초독월, 임차기간)	⑨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⑪ 감가 상각비	⑫ 임차료 (⑬감가상 각비상당액)	⑭ 유류비	⑮ 보 험 료	⑯ 수선비	⑰ 자동차 세	⑱ 기타	⑲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⑳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㉑ 차량 번호	㉒ 업무사용금액			㉓ 업무외사용금액			㉔ 손금불산입 합계 (㉑+㉓)
	㉔ 감가상각비 (상당액) [(㉑또는㉒)×㉑]	㉕ 관련비용 [(㉑-㉒) 또는 (㉑-㉒)×㉑]	㉖ 합계 (㉔+㉕)	㉗ 감가상각비 (상당액) (㉑-㉔) 또는 (㉑-㉔) 또는 (㉑-㉔)×㉑]	㉘ 관련비용 [(㉑-㉒) 또는 (㉑-㉒)×㉑]	㉙ 합계 (㉗+㉘)	
㉚ 합계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④ 차종	⑤ 취득일 (입차기간)	⑥ 전기이월액	⑦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⑧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⑨ 손금추인(산입)액	⑩ 전기이월액(③-④)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번호	④ 양도가액	⑤ 세무상 장부가액				⑥ 처분손실 (④-⑤<0)	⑦ 당기손금산입액	⑧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⑤-⑦)
		⑨ 취득가액	⑩ 감가상각비 누계액	⑪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액 전기이월액(=⑪)	⑫ 합계 (⑨-⑩+⑪)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④ 차종	⑤ 처분일	⑥ 전기이월액	⑦ 손금산입액	⑧ 전기이월액 (⑥-⑦)
합계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업무사용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⑤):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 사용자리(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사용비용(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8항에 따른 비용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000만원 X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아. 보유 또는 임차기간(⑧):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용을 공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㉖):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X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가이월(㉗): 전기에 발생한 차가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㉘): ㉗의 금액과 ㉖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㉙):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㉚):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㉛):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㉜): ㉛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㉝): ㉜의 금액이 ㉙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가이월액(㉞): 전기에 발생한 차가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㉟): 전가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개인)

■ 수록제보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8. 4. 24.>

(3쪽 중 제1쪽)

[illegible]

명세서

[illegible][illegible][illegible]

②① 차량 번호	②② 업무비용액			②③ 업무외비용액			③① 필요경비 불입 합계 (29+30)	③② 필요경비 산입 합계 (19-31)
	②④ 감가상각비 (상당액) [(11)또는(13)×(7)]	②⑤ 관련비용 [(19-①) 또는 (19-13)×(7)]	②⑥ 합계 (24+25)	②⑦ 감가상각비 (상당액) (11)-24 또는 (13)-24)	②⑧ 관련비용 [(19-①) 또는 (19-13)-25]	②⑨ 합계 (27+28)		
③③ 합계								297mm×210mm[배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③④ 차량번호	③⑤ 차종	③⑥ 취득일 (입차기간)	③⑦ 전기이월액	③⑧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③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④⑩ 필요경비추인(산입)액	④⑪ 차기이월액 (③⑨-④⑩)		
④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④③ 차량번호	④④ 양도가액	④⑤ 세무상 장부가액				⑤① 처분손실 (④④-④⑨<0)	⑤② 당기필요경비 산입액 (⑤① ≤ 800만원)	⑤③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⑤①-⑤②)	
		④⑥ 취득가액	④⑦ 감가상각비 누계액	④⑧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④①)	④⑨ 합계 (④⑥-④⑦+④⑧)				
⑤③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⑤④ 차량번호	⑤⑤ 차종	⑤⑥ 처분일	⑤⑦ 전기이월액	⑤⑧ 당기 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 (=⑤②)	⑤⑨ 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	⑥① 차기이월액 (⑤⑧+⑤⑨-⑤⑧)			
⑥① 합계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업무용 사용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가. 복식부기의무(㉠)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나. 차량번호(㉡)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 :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 :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총주행거리란(㉤) :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사용거리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수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용사용비율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및 제68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 각호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인한 비율
- 아.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 가.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용을 공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추인(산입)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필요경비산입액(㉻) : ㉺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 ㉺의 금액이 ㉻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산입액(㉾) : 전기이월액(㉽)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V.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방법 및 서식

1. 국세청고시 제2019-16호 (2019. 4. 1.) (법인사업자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 고시 제2019-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2호)는 이를 폐지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164.1. 제정>

사업연도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용 계산									
③ 사용일자 (요일)	④사용자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km)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km)	⑦주행거리(km)	⑧출.퇴근용(km)		⑨일반 업무용(km)	⑩비 고
	부서	성명							
			⑪사업연도 총주행 거리(km)		⑫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km)		⑬업무사용비율 (⑫/⑪)		



(부록)

작성방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차)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 (당일 동일일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 (당일 동일일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조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 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⑩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배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2016.4. 1. 제정>

사 업 연 도	2019. 1. 1. ~ 2019. 12. 3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예시) - 운행기록 건별 작성 -			법 인 명	(주) 지리산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그랜저	30버 1234

2. 업무용 사용비용 계산

③사용일자 (요일)	④사용자		운행 내역						⑩비고
	부서	성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km)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km)	⑦주행거리(km)	업무용 사용거리(km)			
						⑧출 · 퇴근용(km)	⑨일반 업무용(km)		
3/25	영업팀	설악산	0	10	10	10	-		
	재무팀	백두산	10	30	20	-	20		
	구매팀	한라산	30	50	20	-	-		비업무용
	재무팀	백두산	50	90	40	-	40		
	영업팀	설악산	90	100	10	10	-		
3/26	영업팀	설악산	100	110	10	10	-		
	재무팀	백두산	110	150	40	-	40		
			⑪사업연도 총주행 거리(km)			⑫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km)			⑬업무사용비율(⑫/⑪)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2016.4. 1. 제정>

사 업 연 도	2019. 1. 1. ~ 2019. 12. 3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예시) - 운행기록 건별, 사용자별 병행 작성 -			법 인 명	(주) 지리산
					사업자 등록번호	101-81-12345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그랜저	30버 1234

2. 업무용 사용비용 계산

③사용일자 (요일)	④사용자		운행 내역						⑩비고
	부서	성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km)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km)	⑦주행거리(km)	업무용 사용거리(km)			
						⑧출·퇴근용(km)	⑨일반 업무용(km)		
3/25	영업팀	실악산	-	-	20	20	-	사용자별 작성	
	채무팀	백두산	10	30	20	-	20		
	구매팀	한라산	30	50	20	-	-	비업무용	
	채무팀	백두산	50	90	40	-	40		
	영업팀	실악산	-	-	20	20	-	사용자별 작성	
3/26	채무팀	백두산	110	150	40	-	40		
	구매팀	한라산	150	180	30	-	30		
			⑪사업연도 총주행 거리(km)			⑫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km)			⑬업무사용비용(⑩/⑪)

2. 국세청고시 제2019-17호 (2019. 4. 1.) (개인사업자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 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 고시 제2019-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3호)는 이를 폐지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2019.4.1. 개정>

과 세 기 간		· · · ~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기본정보

① 차 종	② 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용 계산

③사용일자 (요일)	④사용자		운행 내역					⑩비고
	부서	성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km)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km)	⑦주행거리(km)	업무용 사용거리(km)		
						⑧출·퇴근용(km)	⑨일반 업무용(km)	

(뒤 쪽)

작성 방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차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⑩~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V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3.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가 어떤 것이 있나요?
4.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6.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7.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8.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9.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1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요?
1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서식을 어디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1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목차**

1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이지요?
14.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15.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16.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요?
17.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18.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19.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20.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21.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22.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Q A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00만원)을 인정하되
 -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Q A 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Q A 3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법§27의2①, 법칙§27의2①, 소법§33의2①, 소칙§42①)

Q A 4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Q A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법§27의2②, 법령§50의2②, 소법§33의2①, 소령§78의3②)

Q A 6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해당 사업자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칙§27의2⑥, 소칙§42③)

Q A 7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법령§50의2⑤·⑦, 소령§78의3④·⑦)

예) 승용차 관련 총비용이 2,500만원이고,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50만원은 손금(필요경비) 불산입함

Q A 8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고시 법인(제2019-16호), 개인(제2019-17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되는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총 주행 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Q A 9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 받는 것이지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500만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령 §50의2⑦, 소령§78의3⑦)

Q A 1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지요?

- 2016. 4. 1.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에 맞추어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운행내역 : 주행 전 · 후 계기판의 거리(km), 주행거리(km), 업무용사용거리(km, 출 · 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 * 법인사업자 국세청 고시 제2019-16호, 개인사업자 제2019-17호 적용

Q A 1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서식을 어디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소식 ⇨ 고시 · 공고 ⇨ 고시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9-16호,17호)」를 검색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Q A 1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차종, 차량별 연간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별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비치·보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시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법§27의2⑥, 소법§33의2④)

Q A 1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인지요?

- 법인사업자는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됩니다.(법령§50의2③, 소령§78의3③)

Q A 14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 업무용 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법법§27의2③, 소법§33의2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15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법칙§27의2⑤, 소칙§42④)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16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요?

-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합니다.(법령§50의2⑪, 소령§78의3⑧)



17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1.1.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령§78의3④)

Q A 18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소법§33의2③)

Q A 19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합니다.

Q A 20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구법인은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는 5백만원**이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는 4백만원**을 적용합니다.(법령§50의2⑮)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500(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500(4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Q A 21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와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법§27의2③, 법령§50의2⑦·⑩, 소법§33의2②, 소령§78의3⑦)

Q A 27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령§50의2⑨)

Ⅶ. 주요 예규 및 판례

【법인세법】

-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 2017.04.06.)
 - ☞ 완성차에 탑재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2017.04.03.)
 -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하 생략)
- 해외 현지 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작성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1, 2017.03.09.)
 -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기 바람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2017.03.09.)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2017.03.09.)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운전기사 용역대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서면-2017-법인-3075, 2018.02.27.)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2018.02.13.)

1.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2017.11.30.)

- ☞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분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 되어 소멸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09.26.)

- ☞ (질의1)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 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 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의2) 내국법인이 기존에 가입하였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2016.4.1.이후 도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즉시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 2017.07.13.)
 - ☞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임원명의로 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제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06.28.)
 -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서면-2017-법인-0912, 2017.06.22.)
 -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승용차 리스계약 승계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 2017.06.19.)
 - ☞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 2017.04.17.)

- ☞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따른 소득처분액 산정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 2017.03.09.)

-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 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회신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2017.03.09.)

- ☞ 귀 서면질의의 질의1 및 질의4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 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 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빙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38, 2017.03.09.)
 -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기 바람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는 국가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회신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349, 2017.03.09.)
 -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기 바람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서면-2016-법인-5433, 2017.02.22.)
 - ☞ 비영리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부문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사용비율 계산방법(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2016.12.30.)
 -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해당 업무사용비율”



이라 함)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은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자동차정비업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서면-2016-법인-5508, 2016.12.27.)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인-3897 (2016.07.12.)

「법인세법」 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2016.07.18.)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서면-2016-법인-3897, 2016.07.12.)

☞ 「법인세법」 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 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9-서-1935, 2019.09.09.)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이 개정되어 2016사업연도부터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용차량의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당 시행령 부칙에서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최초 보험계약 갱신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6.4.1. 이후 최초 쟁점차량의 보험계약 갱신시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실수를 인정하여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 소급하여 쟁점차량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소유의 승용차량을 임직원 외에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 외의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유지관리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방법에 따라 별도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조사·확인방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사항은 없고, 청구법인 역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비용은 대표자의 사적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차량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바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법인이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익금 산입하는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만일, 대표이사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귀속자를 대표자 외에 타인으로 특정지을 수 없어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2018.11.30.)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2018.10.22.)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VIII. 연도별 개정사항

2016년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 법인이 소유·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 (적용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 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종 전	개 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국세청 고시 제 2016-12호, 2016.4.1.)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 2016년의 경우 2016.4.1. 부터 작성 □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산입) ○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 상각방법 : 정액법 또는 정률법 ☐ 내용연수 : 4~6년(5년 $\pm$ 25%)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 상각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 주주 : 배당 ☐ 임원·사용인 : 상여 등	☐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7년

1.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법인세법 제25조,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의2)

가. 개정취지

-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및 손금인정 제한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① + ②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입금액</th><th>적 용 률</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td>1만분의 20</td></tr> <tr> <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td></tr> </tbody> </table>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 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 $(① + ②) \times 50\%$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 전액 비용 불인정 ☐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 업무용승용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 1천만원까지 손금인정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 축소 (좌 동) ☐ 1천만원 → 5백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8년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 : 800만원 〈추 가〉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월 수 ÷ 12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 :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월 수 ÷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가. 개정취지

-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 (손금산입금액)	☐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 다만,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 연도 1회에 한함	- 20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 1,5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제10항)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좌 동) ☐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Ⅸ. 주요 사적사용 추징사례

사례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

-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등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②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사용금액 추징

-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지출증빙 등을 검토한바 해당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③ 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미적용

- ✓ 법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임차(리스)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 미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도 초과금액을 비용부인하고 법인세 추징

사례 ④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 추징

- ✓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고급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등을 검토한바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 ⑤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추징

-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업무용승용차를 과다보유하고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운행기록부 등을 검토한바 대표자의 배우자(전업주부)가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 추징

사례 ⑥ 주로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 추징

- ✓ 의료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대표자의 골프장 방문·여행 등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소득세 추징

X.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부칙 <제1683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08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 제98조의4 제1항 후단, 제98조의4제2항, 제98조의6제1항 후단, 제98조의6제2항, 제121조의 3제2항·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22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6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55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8.2.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8.2.13>
-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2020.2.11>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20.2.11>

-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 ⑯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2.13>
-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3, 2018.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부칙 <제30396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5항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 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의2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2제1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29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138조의4, 제138조의7, 제138조의8제1항제3호, 제164조의3(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4조의4제1항·제2항(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1항·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7조제1항·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40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및 제1호의1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3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9일
3.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4. 제36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36조의2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용승용차의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4항,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28호, 2017.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81호, 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제4항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3.21>
- ③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3.21>
-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2.31>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

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및 제95조제2항 표 1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58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2.11>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 ⑩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2.11>
-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부칙 <제30395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 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 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 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②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37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 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80조제2항제1호, 제131조의2제1항, 제133조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제4항, 제208조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 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6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 · 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 · 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 · 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항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 ② 영 제78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 ③ 영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발행일자 : 2020년 2월

발행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집필·편집 : 법인세과장 양동구
행정사무관 임형태
세무조사관 김지윤
세무조사관 김관홍
세무조사관 전현혜

-
- *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9)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국세청 대표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